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2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서도원 의원, 김보경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 위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나.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 위원 참여(안 제7조)
- 다. 별지 서식의 용어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11호서식)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이라”를 ““군수”라”로, “포상금”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법 제147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상금지급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적 심의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11조의 제목 “(대장비치)” 를 “(대장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서식” 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으로, “비치하고” 를 “갖추어 놓고”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약 요			
통 지 받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p>첨 부: 통장사본 1부</p> <p>※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p>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참조: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지난연도 채납액 징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참조:

발신: (인)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신고자		징수내역				채납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확인
성명	생년월일	년도납기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채납자		징수촉탁 수 수 료		지급 일자	포상금 지급액	팀장 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 액	징수 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 액			

-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p> <p>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p>	<p>제2조(지급대상) ①</p> <p>----- “군수” 라</p> <p>-----</p> <p>-----</p> <p>-----</p> <p>-----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지방세징수법」</p> <p>-----</p> <p>-----</p> <p>6 ----- .</p> <p>-----</p> <p>----- 법 제147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p> <p>----- 한</p> <p>----- 다)</p> <p>②</p> <p>-----</p>			

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토지정보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 세 외 수 입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외수입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① 포상

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적 심의는 위원회에서 한다.

<삭 제>

<삭 제>

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 1 1 조 (대 장 관 리)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
----- 갖추어 놓고 -----

□ 「지방세기본법」(2023. 12. 29.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3. 제90조및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및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2024. 3. 26. 일부 개정 및 시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6. 일부 개정 및 시행)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2023. 12. 29.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2020. 6. 10. 일부 개정 및 시행)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